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0호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한밭교육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박물관 자료 이용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함(안 제5조).
- 다. 법령 개정에 따라 감정위원회를 삭제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박물관 자료 기증 및 구입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

③ 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2. 학술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4조제3항 관련)

1. 박물관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본 사 용 료(원)			냉 · 난방시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전시 · 체험실 / 교육실 / 관리실 / 자료실 등 박물관 내 시설(실별)	10,000	20,000	30,000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기자재 및 조명시설 포함)에 대하여는 위 유사시설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 따로 정한다. ○ 월 3회 이상 반복적·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박물관 자료 관외 반출

(단위 : 원)

구 분	수 량	이 용 료
박물관 자료	1 점	500,000

3. 박물관 자료 관내 이용

(단위 : 원)

구 분	수 량	이 용 료
사 진 촬 영	1 점	10,000
탁 본	1 점	10,000
모 조(실 측)	1 점	10,000
모 사(실 측)	1 점	10,000
사진 원 판 사용	1 점	5,000

4. 기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영 화 촬 영	1회	30,000	
TV 녹 화 료	1회	30,000	
TV 중 계 료	1회	30,000	
라디오 중 계 료	1회	20,000	
아 치 설 치 료	1건	10,000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한밭교육박물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p> <p>1. (생 략)</p> <p>2. 매주 월요일. <u>다만, 월요일이 공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u></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매주 월요일 <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 <u>로 한다.</u></p>	<p>제4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 <u>는 무료로 한다.</u></p> <p>② <u>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협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u></p> <p>③ <u>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 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u></p> <p>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p>

- 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 2. 학술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
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금지) (생략)

-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
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 2. ~ 5. (생략)

제5조(관람금지) (현행과 같음)

- 1. 술에 취한 사람
-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감정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진위 여
부 판단 및 가격 평가
- 2.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
증
- 3. 소장유물의 가치 평가
-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삭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삭제>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역사학, 교육사학, 민속학 및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를 전공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자에 대하여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밖에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신 설>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

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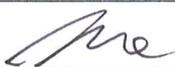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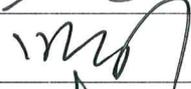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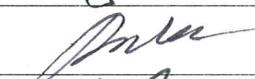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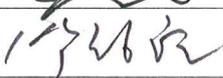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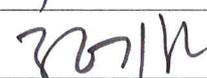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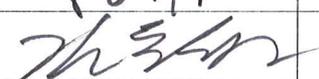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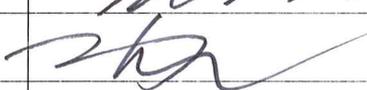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구 비영		
2	박 영재		
3	원 인근		
4	박 상욱		
5	김 대원		
6	이성근		
7	장기현		
8	김동대		
9	김재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